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5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희정 · 권영진 · 강승규
김기현 · 김은혜 · 김승수
이인선 · 김도읍 · 안철수
박준태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아 연(連)과 관청·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2항 중 “2人の 連署”를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한다.

제836조제2항 중 “2人の 連署”를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12條(婚姻의 成立) ① (생략) ②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u>2人의 連署</u>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836條(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① (생략) ②前項의 申告는 當事者 雙方과 成年者인 證人 <u>2人의 連署</u>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812條(婚姻의 成立) ① (현행과 같음) ②----- -----<u>2인이 連달</u> <u>아 서명</u>-----. 第836條(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① (현행과 같음) ②----- -----<u>2인이 連달</u> <u>아 서명</u>-----.